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116
----------	---------

제안년월일 : 2023년 09월 0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약칭이 미반영된 사항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자격제한으로 인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변경함(안 제5조제3항, 안 제9조제2항).
-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상위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탁기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③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u>시의회 의원</u>,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p>	<p>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③ ----- ----- ----- <u>서울특별시</u> <u>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u> <u>시의원</u>----- ----- ----- ----- -----</p>	<p>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③ ----- ----- ----- <u>의회에</u> <u>서 추천하는 시의원</u>----- ----- ----- ----- ----- -----</p>
<p>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 ----- ----- ----- ----- ----- <u>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 ----- ----- ----- ----- ----- <u>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p> <p>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p>	<p>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p> <p>1. <u>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u></p>	<p>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② (개정안과 같음)</p> <p>1. <u>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천하는 시의원</u> 2. ~ 6. (생 략) ③ ~ ⑤ (생 략)	2. ~ 6. (개정안과 같음)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3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고하여야”를 “동의를 받아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의회 의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

의 부분)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위탁사무 모집공고일에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의 민간위탁사무 수행현황

7. 수탁기관이 최근 3년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결과 보고서

②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동일한 수탁기관이 과도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한 위탁사무의 규모와 건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u>“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u></p> <p>5. · 6. (생 략)</p> <p>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 략)</p> <p>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u>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③ (생 략)</p> <p>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u>보고하여야</u> 한다.</p> <p>⑤ (생 략)</p> <p>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생 략)</p> <p>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생 략)</p> <p>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2. (생 략)</p> <p>3. <u>제8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u></p> <p>4. ~ 6. (생 략)</p> <p>③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u></p> <p>5. · 6.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단서 삭제></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동의를 받아야</u>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제8조제1항 및 제8조제3항</u>----- -----</p> <p>4. ~ 6. (현행과 같음)</p> <p>③ -----</p>

다)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⑧ (생략)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
 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
 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

④ ----- 한 차례
만 연임-----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민간위탁사무 모집공고일에 수탁기관이 수
 행하고 있는 시의 민간위탁사무 수행현황

7. 수탁기관이 최근 3년이내에 시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8
 조의 결과 보고서

②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동일
 한 수탁기관이 과도한 민간위탁사무를 수
 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해서 적절한 위탁사무의 규모와 건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
 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

 ----- .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
 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서 신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 6. (생략)

③ ~ ⑤ (생략)

제12조(재계약) ①·② (생략)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

-----.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재계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